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근해장어통발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8. 07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경고(1명)
직원	견책(1명), 변상(3명), 경고(3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☐ 금융어업자금 대출 연장 취급 소홀

○ 어선어업 조업실적 미충족으로 인한 대손보전이 불인정됨.

☐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

○ 대출 한도 초과 취급함.

< 관련법규 >

○ 「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」 제11조(대손보전 대상)

○ 「정책여신업무방법」 제96조(정의), 제117조(기한연장 및 재약정)

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5조(대출금의 용도), 제8조(소요자금 대출가능한도), 제15조(대출상당), 제19조(대출서류의 징구 및 확인), 제225조의2(대손보전 대상, 범위, 한도, 비율 등), 제3편 제3조(상당 및 서류징구), 제45조(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), 제46조(시설자금 소요자금 산정), 제46조의2(시설자금 대출한도)

○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 제10조(심사 및 승인)